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8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김상조, 김인배, 김정곤, 박교상,
정근수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공공하수도의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,
원인자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
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,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16년 7월)

다. 주요내용

-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(안 제32조)
 - 종전 : 가산금 3%(고정비율), 30만원 이상 증가산금 부과
 - 개선 : 납기 경과 후 1개월 범위 내 가산금(3%)를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 및 30만원 이상 증가산금 규정 삭제
- ※ 산정식 : 가산금 = 미납요금 × (3/100) × (체납일수/월력일수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- 본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 방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3% 고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증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 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